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9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박수현 · 조인철 · 양부남
조계원 · 이개호 · 서삼석
임오경 · 한정애 · 김영배
김준혁 · 윤종오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를 시·도지사로 국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 기준을 운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건설공사 인·허가 전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

음.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책무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5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를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을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경비에 대한”으로 한다.

5. 제13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u>시·도지사는</u>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u>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u>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u>시·도지사는</u>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u>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u>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u>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생 략) ③ <u>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u>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u>제13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정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경비에 대한</u>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	---